

투자 위험 등급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우리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6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우리큰만족신종MMF1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큰만족신종MMF1호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우리큰만족신종MMF1호
2. 집합투자업자의 명칭 : 우리자산운용(주)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wooriam.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 2023.02.28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3.04.01**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투자신탁 수익증권 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 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우리자산운용 본점
(☎02-2118-0500 www.wooriam.kr)
각 판매회사 본·지점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 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7. MMF펀드(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는 수익구조가 은행의 예금과 유사하지만, 예금과 달리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되는 날에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그 어떤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10.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관할 국가가 대한민국 이외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 국가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작성기준일: 2023.02.28

우리큰만족신증MMF1호 [펀드코드 : 39347]

투자위험등급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우리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6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 배당상품이며, 단기금융상품 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MMF펀드의 경우 수익구조가 은행의 예금과 유사하지만, 예금과 달리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금리변동위험, 신용위험 또는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 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요약정보는 **우리큰만족신증MMF1호**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집합투자기구는 주로 단기로 거래되는 채권 및 기업어음 등의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법인투자자의 안정적인 수익추구 및 유용한 현금관리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 다. 따라서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이자소득) 추구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법인투자자 전용으로, 개인투자자는 매입할 수 없습니다.									
분류	투자신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투자비용	펀드명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 수수료	총보수	판매 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 비용	1년	2년	3년	5년
	우리큰만족신 종 MMF1 호	없음	0.1000	0.0280	0.1500	0.1048	11	22	34	59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 수로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 니다. 주2)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 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구분	최초 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022.03.01~ 2023.02.28	2021.03.01~ 2023.02.28	2020.02.29~ 2023.02.28	2018.03.01~ 2023.02.28				
	펀드	03.11.28	2.87	1.97	1.65	1.71	2.81			
	비교지수(%)	-	2.88	1.92	1.57	1.62	2.74			
	수익률 변동성(%)	-	0.13	0.15	0.14	0.11	0.17			
주1) 비교지수 : 20%*CP금리 + 60%*CD금리 + 20%*CALL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 비용 지급 후 해당기간 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일 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 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단기금융)(%)				운용 경력 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1 년	최근 2 년	
윤종현	1992	책임 (대리)	6	74,710	3.18	-	2.94	2.00	1 년 4 개월

주1) 이 투자신탁은 본부 또는 팀운용 방식으로 채권운용본부가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 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되는 날에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투자
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금리변동위험	신탁채산을 채권 등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채권에 투자할 예정이나, 투자적격등급의 채권 또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채권금리의 변동에 따라 채권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하여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이 하락하여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또는 신용등급 하락 에 따른 위험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에 영향을 받습니다. 투자 대상 기업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부도발생에 따라 급격히 가격이 변동되거나, 어음 등의 투자에서 발행사의 파산 등의 원인이 생길 경우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MMF의 경우,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 어음 등의 신용평가등급이 최상위등급에서 차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2개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 어음 등을 지체없이 처분하거나 시가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신탁재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장부가와 시가의 괴리조정에 따른 기준가격 변동위험	장부가에 따라 계산된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 그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재산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이 급등락할 수 있습니다.		
	유동화증권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다양한 기초자산(대출채권, 매출채권, 유가증권, 부동산PF 등)의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하는 유동화증권(ABCP, ABSTB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동화자산의 현금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기초자산 발행사의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및 신용보강 기관의 의무불이행 등)이 발생할 경우 유동화증권의 투자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입 방법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오후 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 법인투자자 전용	환매 방법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2영업일(D+1)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오후 5시 경과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3영업일(D+2)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 수수료	해당 사항 없음			
매입·환매 특례	◆ 당일 공고된 기준가격으로 매입·환매가 가능한 경우 • 주식 등 다른 증권(결제소요 2일이상)의 매매와 연계하여 MMF계좌의 입출금 예약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 주기적인 입출금 거래에 대한 사전 약정이 있는 경우 • 판매회사가 고유자금으로 일정한도(MMF별 판매규모의 5%와 100억 중 큰 금액) 내에서 MMF수익증권을 당일 공고된 기준가격으로 매입하여 투자자의 환매청구에 응할 수 있음 주1) 위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익일 매입·환매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주2) 상기의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별첨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가	산정 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 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wooriam.kr)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포함)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집합투자업자	우리자산운용(주) (대표번호: 02-2118-0500 / 인터넷 홈페이지 : www.wooriam.kr)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 · 매출 총액	10조 좌	
효력발생일	2023년 04월 01일	존속 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wooriam.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wooriam.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wooriam.kr)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wooriam.kr)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우리큰만족신중MMF1호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39347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종류: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종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MMF)**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 (추가로 자금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해당사항 없음**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X (해당사항 없음)**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조원**

주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 **추가형으로 모집기간 없이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나. 모집장소: 판매회사 본·지점으로 판매회사 명단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wooriam.kr) 홈페이지 참고

다. 모집절차 및 방법: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1) 모집의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부 중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우리큰만족신종MMF1호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39347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 경 사 항
2003.11.28	최초 설정
2005.06.07	Late trading 적용
2005.11.07	감독규정 변경(운용제한 완화)에 의한 약관변경
2005.11.21	익일환매 시행
2006.07.01	익일입금 시행
2007.06.13	수탁회사 변경(외환은행 → 한국증권금융)
2009.05.01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펀드명칭 변경 큰만족신종MMF1호 투자신탁 → 동양큰만족신종MMF1호
2009.10.06	법령변경에 따른 투자대상/ 투자제한 변경
2011.05.18	책임운용역(손경수→이정호) 및 법령변경사항반영등
2013.06.27	투자대상자산 추가 (전자단기사채등)
2013.11.01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에 따른 투자대상/투자제한 변경
2014.01.21	책임운용역변경(이정호→류진호)
2015.12.22	정기갱신
2016.07.02	투자 위험등급 분류 체계 개편
2016.12.21	정기갱신
2017.03.24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류진호→김동환),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삭제
2017.12.22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및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추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18.12.19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2019.04.11	유동화증권 투자위험 기재, 자본시장법및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19.08.01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변경에 따른 사명 및 펀드명칭 변경
2019.09.16	기업공시서식 개정 및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기재정정
2019.12.05	책임운용역 변경(이지현→김진평), 부책임운용역 변경(김동환→김재욱),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2020.02.12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2020.03.17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
2020.04.28	부책임운용역 삭제(김재욱)

2021.02.16	정기갱신
2021.10.21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반영 책임운용역 변경(김진평→윤종현)
2022.04.01	MMF관련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반영(듀레이션 변경 : 75일 ⇒ 60일),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23.04.01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반영,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이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저축만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우리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1 37층 02-2118-0500

주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작성기준일 현재)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단기금융)			
			집합투자 기구수(개)	운용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윤종현	1992	대리	6	74,710	3.18	-	2.94	2.00
운용경력년수			주요 이력					
1년 4개월			2018.10 ~ 2019.06 KIS채권평가 원화채권평가 2019.07 ~ 현재 우리자산운용 채권운용					

주1) 이 투자신탁은 본부 또는 팀운용 방식으로 채권운용본부가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

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운용 중인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 없음

주5) 동종집합투자기구 운용기간이 1년 또는 2년 미만인 경우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나.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해당사항없음

다.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내역

책임운용전문인력	운용기간
김진평	2019.12~2021.10
윤종현	2021.10~현재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운용기간
김재욱	2019.12~2020.04

주1) 최근 3 년간의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 상기의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개방형, 추가형, 공모형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단기금융상품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자에게 유용한 현금관리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그 어떤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권리를 포함합니다.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 자 대 상 세 부 설 명
1.양도성예금증서	남은 만기가 6개월 이내인 양도성 예금증서

2.채무증권 (채권등)	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법 제71조제4호에 따른 주권관련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합니다) 및 기업어음증권. 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3.어음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합니다)
4.단기대출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5.금융기관에의예치	만기가 6개월 이내인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예의 예치
6.단기금융집합투자 증권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7.단기사채등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인 사채권으로서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된 것
8.환매조건부매도	투자신탁 보유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
9.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10.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자산에 운용하여야 합니다. (1) 현금 (2) 국채증권 (3) 통화안정증권 (4) 잔존만기가 1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양도성 예금증서·정기예금 나. 지방채증권·특수채증권·사채권(법 제71조제4호나목 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 행된 사채권은 제외합니다)·기업어음증권 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합니다) 라. 단기사채 (5) 환매조건부매수 (6) 단기대출 (7) 수시입출입이 가능한 금융기관예의 예치
11.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자산에 운용하여야 합니다. (1) 제10호 (1)~(3)에 해당하는 것 (2) 잔존만기가 7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제10호 (4) 각목에 해당하는 것 (3) 제10호 (5)~(7) 까지에 해당하는 것
12.채무증권신용평 가등급의 제한 (양도성예금증서,	①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채무증권(양도성 예금증서 및 금융기관이 발행·매출·증개한 어음 및 채무증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

어음 채무증서를 포함)	의 신용평가등급(2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합니다)이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이하 "상위 2개 등급"이라 합니다)이내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용평가등급은 세분류하지 않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은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에 미달하거나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1.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채무증권 2. 담보 또는 처분옵션을 감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 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채무증권 3.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채무증권으로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 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채무증권 ③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서 운용하는 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제2항 제1호의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을 포함합니다)이 최상위등급에서 차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당해 채무증권에 대한 신용위험을 재평가하고 편입비율을 축소하는 등 수익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 편입된 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 2개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편입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 등급에 상응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증권을 지체없이 처분하거나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	---

나. 투자제한

투자대상	투자제한의 내용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 환매조건부매수

2. 동일종목투자	채무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여 동일인(금융투자업규정 제7-19조제4항에 따른 동일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발행한 채무증권[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영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운용하는 행위 가. 채무증권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 (다만,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채무증권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로 하며, 만기 80일 이상 100일 이내인 양도성예금증서(이하 "지표물 양도성예금증서"라 한다)는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까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어음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 (다만,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어음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로 한다) 다. 발행 당시 만기가 7영업일 이내인 단기사채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 (다만,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경우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0.5%로 한다)이 경우 가목의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종목 채무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영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3.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가. 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매조건부매수 (1) 만기 30일 이내일 것 (2) 거래상대방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일 것 (3) 대상증권은 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최상위등급의 채무증권일 것 다. 각 집합투자기구가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지표물 양도성예금증서를 취득한 금액
4. 증권 차입 또는 대여	증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5. 환매조건부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를 초과하여 일정기간 후에 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증권을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6. 잔존만기의 제한	이 투자신탁의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이 60일을 초과하는 행위
7. 투자대상의 제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행위 가.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이 환율·증권의 가치 또는 지수의 변동에 따라 변동하거나 계약시점에 미리 정한 특정한 신용사건의 발생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되도록 설계된 것 나.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 만기 또는 거래기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
8. 다른 단기금융 집합투자 증권에의 투자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9. 국채증권투자	남은 만기가 1년 이상인 국채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10. 채무증권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상을 채무증권(법 제4조제3항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을 말하며, 환매조건부매매에 의한 투자금액을 제외합니다)에 투자하지 않는 행위
11. 안정적 자산비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산에 대한 투자금을 합산한 금액이 투자 신탁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하 “안정적 자산 비중”이라 합니다)이 100분의 30이하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 하는 행위 가. 현금 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통화안정증권 또는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 다. 양도성 예금증서 라.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다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예의

	예치 마.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단기사채 또는 어음(기업어음증권을 포함) 바. 금융투자업규정 제7-1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기대출 또는 환매조건부 매수. 다만, 환매조건부 매수의 대상증권이 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이며 최소증거금률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19조제3항제2호 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사.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증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 또는 단기사채
투자한도초과	① 제3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채무증권 또는 그 밖의 거래에 대해서는 편입비율을 축소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②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가격변동 등의 사유로 제9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의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결정한 채권 및 기업어음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④ 일시적인 대량 환매대금의 지급으로 가. 투자대상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자산의 운용비율을 하회하게 되는 경우에는 하회된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그 비율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이 집합투자기구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이자소득) 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펀드운용 프로세스 및 포트폴리오 관리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먼저 채무 불이행 위험 관리를 위하여 안전자산에 투자하며, 채권은 등급 AA, 기업어음은 등급 A2 이상으로 국한하며 주로 국공채, 은행채/CD, 최상위 등급 회사채 및 우량기업어음등에 투자합니다. 또한 편입자산의 가격 변동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집합투자기구별로 가중평균 잔존일수를 60일 이하로 유지하여 금리변동 위험을 최소화 합니다. 한편 환매 요청시 유동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시장내 거래가 활발한 자산을 대상으로 투자하며, 채권은 국공채, 은행채를 위주, 기업어음은 A1을 주 대상으로 투자하며, 자산중 일부분은 1일만기 자산으로 유지하여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관리합니다.

나. 비교지수

이 집합투자기구는 주로 단기로 거래되는 채권 및 기업어음 등의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기 때문에, 성과비교를 위해 다음과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합니다.

$$\text{※ 비교지수} : 20\% \times \text{CP금리} + 60\% \times \text{CD금리} + 20\% \times \text{CALL}$$

주)[CP금리]는 기업어음의 수익률, [CD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의 수익률, [Call]은 은행간 단기대출 금리를 말합니다.

다.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주로 단기로 거래되는 채권 및 기업어음 등의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자의 안정적인 수익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주로 단기로 거래되는 채권 및 기업어음의 가격변동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MMF펀드(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수익구조가 은행의 예금과 유사하지만, 예금과 달리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 주요내용
금리변동위험	신탁재산을 채권 등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하여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이 하락하여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또는 신용등급 하락 에 따른 위험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에 영향을 받습니다. 투자 대상 기업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부도발생에 따라 급격히 가격이 변동되거나, 어음 등의 투자에서 발행사의 파산 등의 원인이 생길 경우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MMF의 경우,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 어음 등의

	신용평가등급이 최상위등급에서 차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2개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 어음 등을 지체없이 처분하거나 시가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신탁재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 주요내용
장부가과 시가의 괴리조정에 따른 기준가격 변동위험	장부가에 따라 계산된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 그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재산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이 급등락할 수 있습니다.
유동화증권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다양한 기초자산(대출채권, 매출채권, 유가증권, 부동산PF 등)의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하는 유동화증권(ABCP, ABSTB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동화자산의 현금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기초자산 발행사의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및 신용보강 기관의 의무불이행 등)이 발생할 경우 유동화증권의 투자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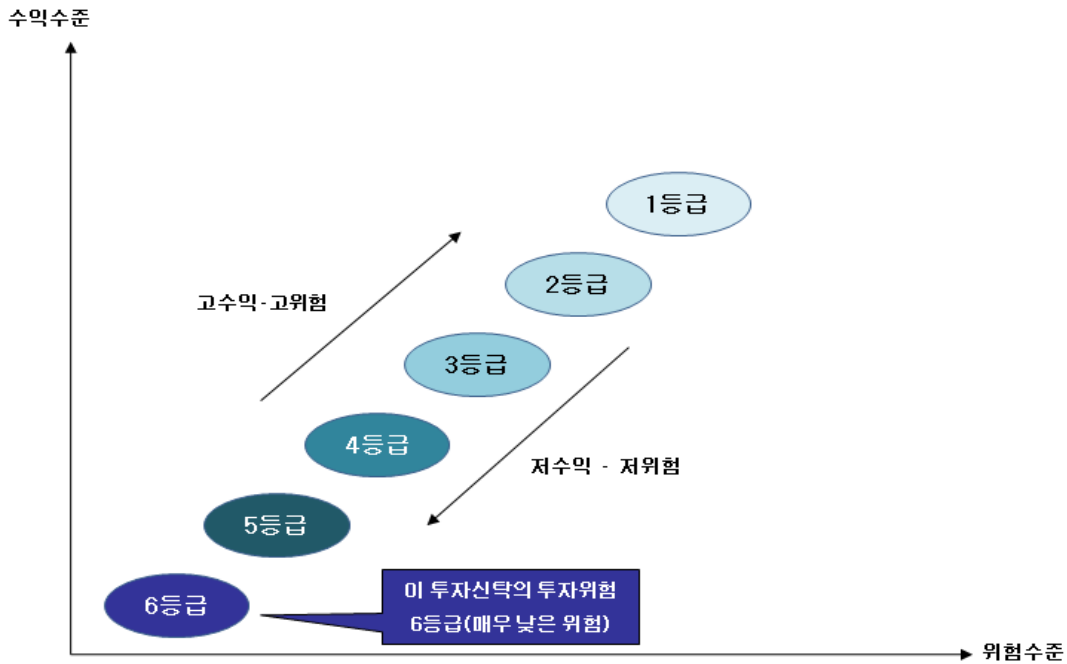
다. 기타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이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 또는 제한위험	현저한 거래부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거나 유가증권시장등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자증권등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투자신탁재산의 공정한 평가가 곤란하여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매가 연기될 수 있으며,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와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환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의 기준가격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집합투자기구의 재산가치가 변동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기타위험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환매연기 또는 일정기간 환매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합니다)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합니다)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집합투자기구는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로 수익률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 기준으로 위험등급이 결정됩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 변동성은 0.10%로 6등급 체계 중 6등급(표준편차 0.5%이하)에 해당하는 매우 낮은 위험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해당 수준의 변동성에 대한 인지가 가능하고, 이에 따른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위험등급은 매 결산 시마다 재산정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우리자산운용 자체 위험분류 기준>

■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기준

구 분	수준	개 요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①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구조화된 상품(전략)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구조화된 상품(전략)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 위험	①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으로 구조화된 상품(전략)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단,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을 A-이상이거나, 그에 상응할 경우 한정) ③ 차익거래 전용 집합투자기구 ④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①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②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기준"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부여되는 위험등급을 말하며, 추후 설정기간이 3년이 경과하는 경우 "수익률 변동성 기준"으로 투자위험 등급을 재산정할 예정이며, 이 경우 투자위험 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말합니다.
3.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말합니다.
4.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말합니다.
5.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헤지 여부·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위험등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6.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재간접(Fund of Funds)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주로 편입하고자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속성을 기초로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7. 부동산, 특별자산 및 위에 명시되지 않은 펀드의 경우 운용방법 및 편입자산의 성향에 따라 별도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수익률 변동성 기준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수준	매우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낮은 위험
표준편차	25%초과	25%이하	15%이하	10%이하	5%이하	0.5%이하

1. “수익률 변동성 기준”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부여되는 위험등급으로 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 위험등급은 매 결산 시마다 재산정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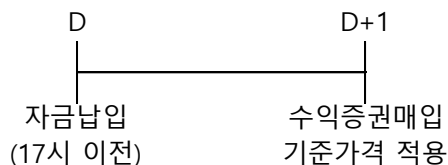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의 창구에서 직접 매입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해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 시 자금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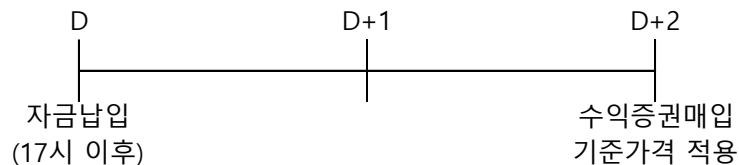
*** 이 투자신탁은 법인투자자 전용으로, 개인투자자는 수익증권을 매입할 수 없습니다.**

(2)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7시(오후5시)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 기준가격



○17시(오후5시) 경과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 공고되는 수익증권 기준가격



*** 이 투자신탁은 수익증권 매입시 익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일종가로 계산)으로 수익증권 매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별첨1’에서 정한 경우에는 당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전일 종가로 계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입하실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청구 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환매신청이 가능한 경우 온라인을 통해서 환매도 가능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17시(오후5시)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2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2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 17시(오후5시)이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3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 수익증권 환매시 적용기준가격 및 환매금의 실수령 예시

오후 5시 이전	오후 5시 경과 후
-환매청구일(D)로부터 2영업일(D+1)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2영업일(D+1) 에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청구일(D)로부터 3영업일(D+2)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3영업일(D+2) 에 환매대금을 지급
D D+1 환매청구 (17시 이전) 기준가격 적용 환매대금 지급	D D+1 D+2 환매청구 (17시 이후) 기준가격 적용 환매대금 지급

* '별첨1'에서 정한 경우에는 당일의 공고된 기준가격(전일종가로 계산)으로 수익증권을 환매하실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은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에 의해 기준시점이 결정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수익증권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일정한 날의 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②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회사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④ 그 밖에 ①부터 ③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수익증권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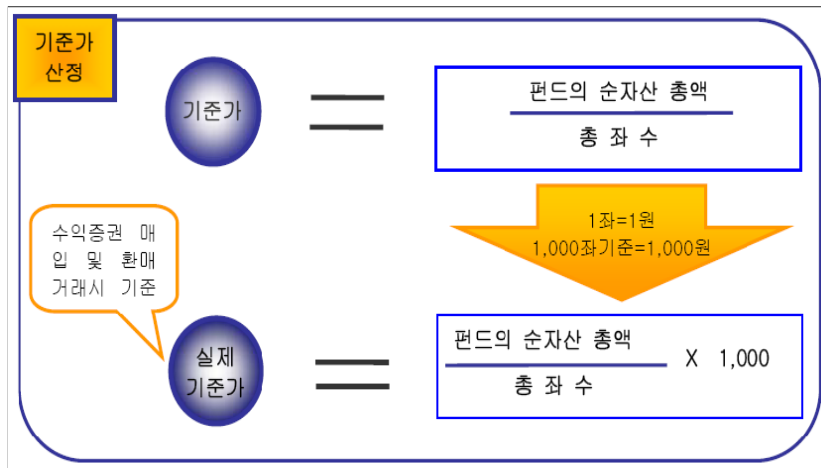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wooriam.kr) · 판매회사 ·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이투자신탁은 단기금융투자신탁으로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그 종류별로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장부가가격으로 평가합니다.

구 분	내 용
채무증권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취득원가 및 이자수익에 가감하여 산정한 가격
채무증권외의 자산	취득원가에 평가일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수익을 더하여 산정한 가격

주) 유효이자율법이란 유효이자율(채무증권의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를 최초로 취득할 당시의 취득원가에 일치시키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할인 또는 할증차금의 상각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상기규정에도 불구하고 장부가가격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편입증권 등을 시가에 의하여 조정평가할 수 있습니다.

* 시가평가방법

구 분	내 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시세가 형성된 채권)
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위 상장채권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상장채권 포함)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발행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 또는 등록된 집합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상기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규약 제19조제11호에 따른 “안정적 자산 비중”이 3영업일 연속 100분의 30 이하가 된 경우에는 법 제2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투자신탁 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법시행령 제260조제2항에 따른 공정가액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 상기에 따른 장부가격 평가 중단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다음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가격으로 평가합니다.

- 안정적 자산비중 감소, 시가·장부가 괴리율 확대 등 선환매 유인 발생이 우려되는 위기 상황에서의 장부가격 평가 중단을 포함하여 이 투자신탁재산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자산을 매각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 직전 10영업일 이내에 일시적·일회성 대량 환매대금의 지급이 발생한 경우

(2) 선환매유인 관리조치

1.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 장부가격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대량환매 등에 사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7-3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자산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2. 집합투자업자는 일시적인 대량환매 등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잔존만기가 짧은 자산의 비중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여 운용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3. 집합투자업자는 1.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장부가격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일시적인 대량환매 등의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해당 방안이 실행 가능한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및 점검하여야 합니다.
4.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서 일시적인 대량환매 등이 발생하여 안정적 자산비중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 평가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서 일시적인 대량환매 등으로 투자자간의 형평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환매연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환매를 일정 기간 동안 연기할 수 있습니다.

6. 5.에 따라 환매를 연기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기간 동안 안정적 자산 확보방안, 평가방법 변경(시가평가), 적용시점 등 향후 운용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환매 연기가 종료된 시점부터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등

구분	주요내용
구성	대표이사, 운용담당임원, 평가담당임원, 해당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본부장,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 평가담당부서장, 기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업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1. 집합투자재산 평가의 일관성유지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재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관한 사항 3. 채권평가회사의 선정 및 변경과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4. 부도채권 등 부실자산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재산 평가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7.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8. 기타 관련법규 및 집합투자계약 등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관련법규 및 집합투자계약에 의해 위임된 사항으로서 집합투자재산의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펀드명칭	가입자격	지급비율(연간, %)			
		선취 판매수수료	후취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우리큰만족신중 MMF1호	법인에 한함	없음	없음	없음	-

부과기준	-	-	-	-
------	---	---	---	---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우리큰만족법인MMF1호	
집합투자업자보수	0.0500	매 3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0.0280	
신탁업자보수	0.01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120	
총보수	0.1000	
기타비용	0.0048	사유발생시
총보수비용	0.1048	-
(동종유형 총보수)	0.1500	-
합성총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보수 포함)	0.1048	-
증권거래비용	0.0049	사유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다음과 같은 비용(증권거래 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을 포함합니다. 단, 세부 지출 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예탁원결제보수, 채권평가보수, 부동산감정평가보수, 감사보수, 펀드평가보수, 지수사용료 등

주2)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은 다음과 같은 비용을 포함합니다. 단 세부 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장 또는 등록주식 매매수수료, 장내파생상품 매매수수료, 장외파생상품 매매수수료, 현금 중개수수료, 대차 또는 대주, Repo 거래 중개수수료, 해외자산(주식, 채권, 선물, 장외파생, 기타 Forward 매매수수료) 등

(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원)

구분	금액
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24,196,973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비용 비율을 연 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설정전인 종류 수익 증권의 경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추정할 수 없어 기재하지 않았으나 당해 종류 수익증권이 설정된 후에는 발생한 비용을 기재합니다. [직전 회계연도: 2021.11.28 ~ 2022.11.27]

주4) 총보수·비용 비율(TER: Total Expense Ratio)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 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5)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6)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 · 비용예시

(단위: 천원)

펀드명	투자기간	1년	2년	3년	5년	10년
우리큰만족신종 MMF1호	판매수수료 및 보수 · 비용	11	22	34	59	134
	판매수수료 및 보수 · 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1	22	34	59	134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 · 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 · 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 · 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투자수익율,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집합투자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하며 그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익금의 분배를 유보합니다.

1. 총이익이 0보다 작은 경우로서 실현된 이익과 평가이익을 모두 유보하는 경우

(1) 이익분배금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매수

○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투자신탁의 새로운 수익증권을 매수 할 수 있습니다.

○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수익자별 매수 수익증권의 합계 수량을 집합투자업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상환금등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수탁회사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등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규약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

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수탁회사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한 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2)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 × 환급비율*

*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1 이면 1, 환급비율 <0 이면 0 으로 함

한편,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일반적으로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20기 (2021.11.28 ~ 2022.11.27)	삼화회계법인	적정
제19기 (2020.11.28 ~ 2021.11.27)	삼화회계법인	적정
제18기 (2019.11.28 ~ 2020.11.27)	삼화회계법인	적정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재무상태표			
항 목	제20기	제19기	제18기
	(2022.11.27)	(2021.11.27)	(2020.11.27)
운용자산	192,260,414,841	621,498,037,238	759,469,334,580
증권	190,326,351,251	599,424,556,278	746,830,833,240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1,934,063,590	22,073,480,960	12,638,501,340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1,909,906,176	1,324,667,375	12,162,860,416
자산총계	194,170,321,017	622,822,704,613	771,632,194,996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51,857,279	122,445,335	165,184,985
부채총계	51,857,279	122,445,335	165,184,985
원본	189,858,034,647	617,267,144,769	761,923,031,773
수익조정금	-5,986,909,381	322,838,656	3,100,803,811
이익잉여금	10,247,338,472	5,110,275,853	6,443,174,427
자본총계	194,118,463,738	622,700,259,278	771,467,010,011

[단위 : 원, %]

손익계산서			
항 목	제20기	제19기	제18기
	(2021.11.28 ~ 2022.11.27)	(2020.11.28 ~ 2021.11.27)	(2019.11.28 ~ 2020.11.27)
운용수익	9,715,112,413	5,220,144,049	6,627,077,899
이자수익	9,774,345,222	5,620,058,716	6,817,609,014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손)	-59,232,809	-399,914,667	-190,531,115
기타수익	1,079,350,711	534,744,506	415,442,362
운용비용	-523,155,822	-614,605,342	-570,670,844
관련회사 보수	-497,104,851	-583,269,686	-549,314,763
매매수수료	-26,050,971	-31,335,656	-21,356,081
기타비용	-23,968,830	-30,007,360	-28,674,990
당기순이익	10,247,338,472	5,110,275,853	6,443,174,427
매매회전율	0.00	0.00	0.00

[단위 : 백만원]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구분	당해 연도			전년도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0.00	0.00	0.00	0.00	0.00	0.00
주식 이외의 증권(채권 등)	6,150,827.94	0.00	0.00	6,804,266.76	0.00	0.00
부동산	0.00	0.00	0.00	0.00	0.00	0.00
장내파생상품	0.00	0.00	0.00	0.00	0.00	0.00
장외파생상품	0.00	0.00	0.00	0.00	0.00	0.00
합계	6,150,827.94	0.00	0.00	6,804,266.76	0.00	0.00

주1) 장외 채권거래와 같이 별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

나. 재무상태표

[단위:원]

과목	제20기(2022.11.27)		제19기(2021.11.27)		제18기(2020.11.27)	
	금	액	금	액	금	액
자 산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1,934,063,590		22,073,480,960		12,638,501,340
1. 현금및현금성자산	1,934,063,590		22,073,480,960		12,638,501,340	
2. 예치금	0		0		0	
3. 증거금	0		0		0	
대출채권		161,091,633,202		324,879,682,678		370,254,578,940
1. 콜론	700,000,000		0		6,000,000,000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57,100,000,000		125,700,000,000		80,000,000,000	
3. 매입어음	103,291,633,202		199,179,682,678		284,254,578,940	
4. 대출금	0		0		0	
유가증권		29,234,718,049		274,544,873,600		376,576,254,300
1. 지분증권	0		0		0	
2. 채무증권	29,234,718,049		274,544,873,600		376,576,254,300	
3. 수익증권	0		0		0	
4. 기타유가증권	0		0		0	
파생상품		0		0		0
1. 파생상품	0		0		0	
부동산과 실물자산		0		0		0
1. 건물	0		0		0	
2. 토지	0		0		0	
3. 농산물	0		0		0	
4. 축산물	0		0		0	
기타운용자산		0		0		0
1. 임차권	0		0		0	
2. 전세권	0		0		0	
기 타 자 산		1,909,906,176		1,324,667,375		12,162,860,416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0		0		11,056,990,000	
2. 정산미수금	0		0		0	
3. 미수이자	1,894,866,729		1,315,726,776		1,103,423,841	
4. 미수배당금	0		0		0	
5. 기타미수입금	15,039,447		8,940,599		2,446,575	
6. 기타자산	0		0		0	
7. 수익증권청약금	0		0		0	
자 산 총 계		194,170,321,017		622,822,704,613		771,632,194,996
부 채						
운 용 부 채		0		0		0
1. 파생상품	0		0		0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0		0		0	
3. 기타운용부채	0		0		0	
기 타 부 채		51,857,279		122,445,335		165,184,985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0		0		0	
2. 정산미지급금	0		0		0	
3. 해지미지급금	0		0		0	
4. 수수료미지급금	51,857,279		122,445,335		164,583,892	
5. 미지급이익분배금	0		0		0	
6. 기타미지급금	0		0		601,093	
부 채 총 계		51,857,279		122,445,335		165,184,985
자 본						
1. 원 본	189,858,034,647		617,267,144,769		761,923,031,773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5,986,909,381		322,838,656		3,100,803,811	
3. 이월잉여금	10,247,338,472		5,110,275,853		6,443,174,427	
(발행좌수 당기: 189,858,034,647 좌	이익잉여금	10,247,338,472		5,110,275,853		6,443,174,427
전기: 617,267,144,769 좌	수익조정금	0		0		0
전전기: 761,923,031,773 좌)						
(기준가격 당기: 1,022.44 원						
전기: 1,008.80 원						
전전기: 1,012.53 원)						
자 본 총 계		194,118,463,738		622,700,259,278		771,467,010,011
부 채 와 자 본 총 계		194,170,321,017		622,822,704,613		771,632,194,996

다. 손익계산서

[단위:원]

과 목	제20기(2021.11.28 ~ 2022.11.27)		제19기(2020.11.28 ~ 2021.11.27)		제18기(2019.11.28 ~ 2020.11.27)	
	금 액		금 액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10,853,695,933		6,154,803,222		7,233,051,376
1. 이 자 수 익	9,774,345,222		5,620,058,716		6,817,609,014	
2. 배당금수익	0		0		0	
3. 수수료수익	1,079,350,711		534,744,506		415,442,362	
4. 기타투자수익	0		0		0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92,846,322		79,265,872		293,342,891
1. 지분증권매매/평가차익	0		0		0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21,236,055		13,427,763		45,979,958	
3. 수익증권매매/평가차익	0		0		0	
4.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71,610,267		65,838,109		247,362,933	
5.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0		0		0	
6. 외환거래/평가차익	0		0		0	
7. 기타차익	0		0		0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152,079,131		479,180,539		483,874,006
1. 지분증권매매/평가차손	0		0		0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104,860,391		465,383,070		440,875,358	
3. 수익증권매매/평가차손	0		0		0	
4.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손	47,218,740		13,797,469		42,998,648	
5.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0		0		0	
6. 외환거래/평가차손	0		0		0	
7. 기타차손	0		0		0	
운 용 비 용		547,124,652		644,612,702		599,345,834
1. 운용수수료	248,552,425		291,634,844		274,657,438	
2. 판매수수료	139,189,359		163,315,510		153,807,766	
3. 수탁수수료	49,710,485		58,326,969		54,931,613	
4. 사무수탁수수료	59,652,582		69,992,363		65,917,946	
5. 지급수수료	50,019,801		61,343,016		50,031,071	
6. 기타비용	0		0		0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10,247,338,472		5,110,275,853		6,443,174,427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0.053973689		0.008278872		0.008456464

2. 연도별 설정현황

[단위:억좌,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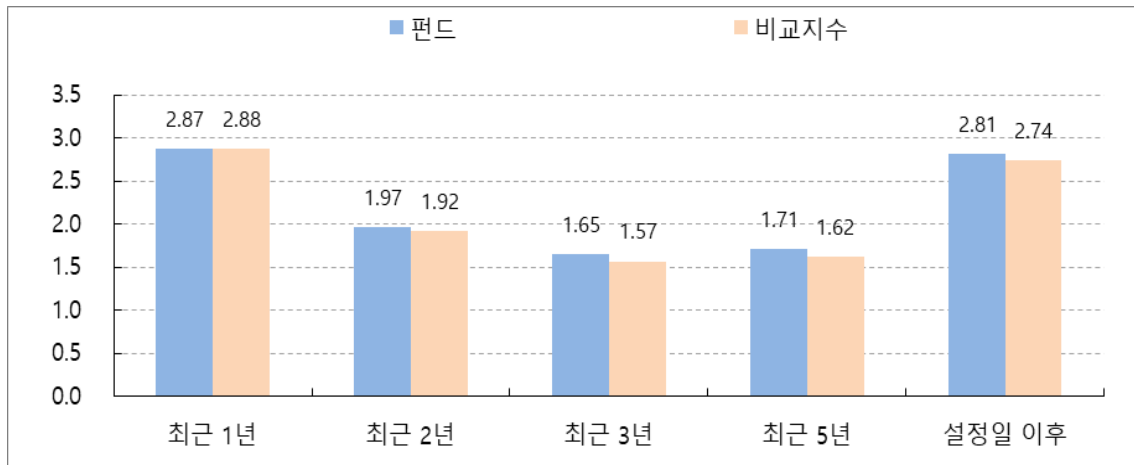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2021.11.28 ~ 2022.11.27	6,172.67	6,172.67	21,395.05	21,527.93	25,669.14	25,861.89	1,898.58	1,898.58
2020.11.28 ~ 2021.11.27	7,619.23	7,619.23	26,518.32	26,621.74	27,964.88	28,065.07	6,172.67	6,172.67
2019.11.28 ~ 2020.11.27	4,272.43	4,272.43	10,679.08	10,786.05	7,332.27	7,408.23	7,619.23	7,619.23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협회 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단위:%]

기간	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022.03.01~ 2023.02.28	2021.03.01~ 2023.02.28	2020.02.29~ 2023.02.28	2018.03.01~ 2023.02.28	2003.11.28~ 2023.02.28
펀드	2003.11.28	2.87	1.97	1.65	1.71	2.81
비교지수		2.88	1.92	1.57	1.62	2.74
수익률 변동성		0.13	0.15	0.14	0.11	0.17

주1) 비교지수 : 20%*CP금리 + 60%*CD금리 + 20%*C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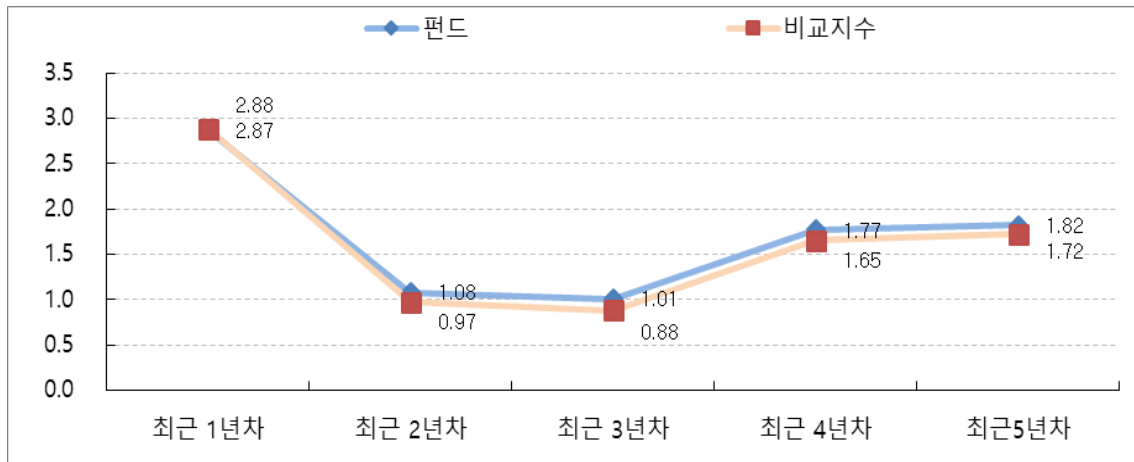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평균 수익률은 과세전의 수익률이며,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를 말합니다.

주5) 연평균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단위:%]

기간	설정일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022.03.01~ 2023.02.28	2021.03.01~ 2022.02.28	2020.03.01~ 2021.02.28	2019.03.01~ 2020.02.29	2018.03.01~ 2019.02.28
펀드	2003.11.28	2.87	1.08	1.01	1.77	1.82
비교지수		2.88	0.97	0.88	1.65	1.72

주1) 비교지수 : 20%*CP금리 + 60%*CD금리 + 20%*C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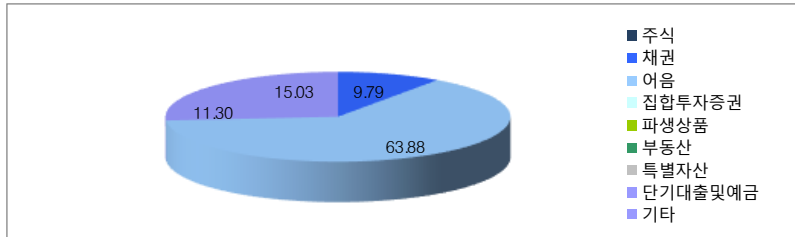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도별 수익률은 과세전 수익률로,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으며,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 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 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기간 수익률'을 기재합니다.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환산 수익률'을 기재합니다.

주5)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 집합투자기구 자산현황



[2023.02.27 현재 / 단위 : 억원,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합계	0.0 (0.00)	241.1 (9.79)	1,573.3 (63.88)	0.0 (0.00)	0.0 (0.00)	0.0 (0.00)	0.0 (0.00)	0.0 (0.00)	0.0 (0.00)	278.4 (11.30)	370.0 (15.03)	2,462.8 (100.00)
KRW	0.0 (0.00)	241.1 (9.79)	1,573.3 (63.88)	0.0 (0.00)	0.0 (0.00)	0.0 (0.00)	0.0 (0.00)	0.0 (0.00)	0.0 (0.00)	278.4 (11.30)	370.0 (15.03)	2,462.8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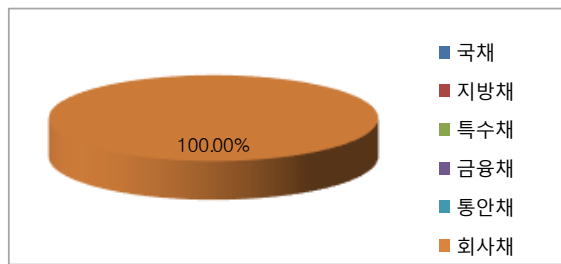
(주 1)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주 2) 어음 등 : CD 및 어음을 나타냄

1) 국내 채권종류별 구성현황

[2023.02.27 현재 / 단위 :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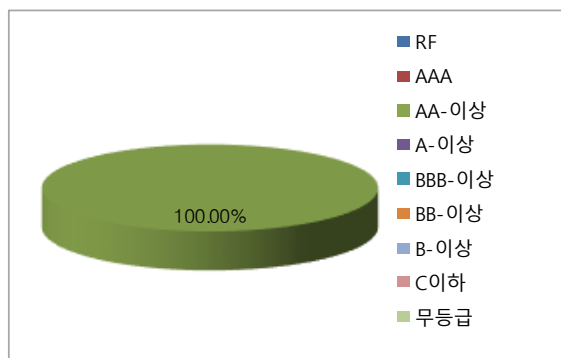
구분	금액	비중
국채	-	0.00%
지방채	-	0.00%
특수채	-	0.00%
금융채	-	0.00%
통안채	-	0.00%
회사채	241	100.00%
합계	241	100.00%



2) 국내 채권신용평가등급별 구성 현황

[2023.02.27 현재 / 단위 : 억원, %]

구분	금액	비중
RF	-	0.00%
AAA	-	0.00%
AA-이상	241	100.00%
A-이상	-	0.00%
BBB-이상	-	0.00%
BB-이상	-	0.00%
B-이상	-	0.00%
C이하	-	0.00%
무등급	-	0.00%
합계	241	100.00%



3) 해외채권 및 해외주식 국가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4) 국내 주식 업종 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5) 해외채권 및 해외주식 통화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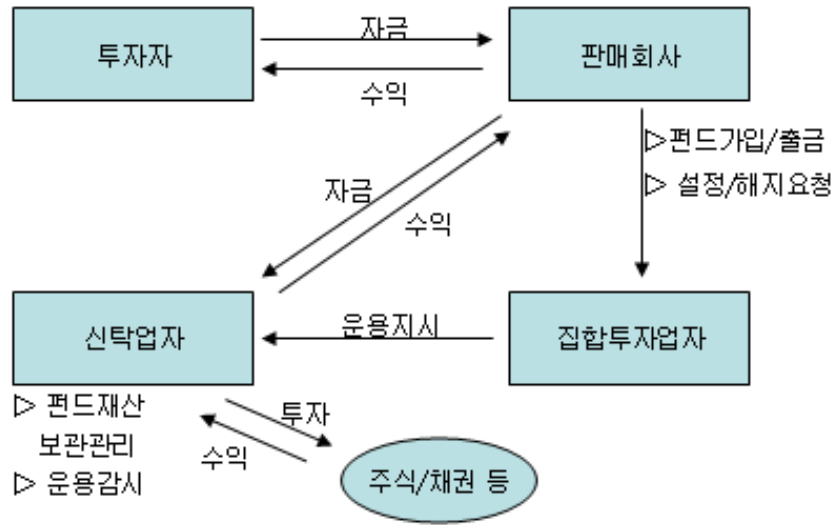
6) 국내 파생상품별 구성현황

해당사항 없음

7) 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

해당사항 없음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우리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1 37층 (02-2118-0500 www.wooriam.kr)
회사연혁	2000. 6. 운용사 설립허가 2000. 7. 동양오리온투신증권에서자산운용 부문 분리 설립 2000. 8. 영업개시 2000. 9. 투자자문업·일임업 등록 2009. 1. 관리자산 8.9조원 2010. 4. 사명변경(구)동양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2019. 8. 사명변경(구)동양자산운용주식회사 2021.10.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주) 집합투자업 사업부문 분할합병
자본금	200억원
주요주주	우리금융지주 73%, 유안타증권 27%

나. 주요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억원)

요약재무상태표			요약손익계산서		
항목	21.12.31	20.12.31	항목	21.12.31	20.12.31
유동 자산	430.4	259.1	영업수익	260.1	233.3
고정 자산	853.1	922.1	영업비용	175.1	149.4
자산 총계	1,283.5	1,181.2	영업이익	85.0	83.9
유동 부채	68.1	51.3	영업외수익	20.4	7.4
고정 부채	-	-	영업외비용	1.2	2.2
부채 총계	68.1	51.3	세전순이익	104.2	89.1
자본금	200	200.0	법인세비용	20.9	22.0
자본잉여금	121.1	121.1			
이익잉여금	888.7	805.4			
자본조정	-	-			
기타포괄손익	5.6	3.4			
자본총계	1,215.4	1,129.9	당기순이익	83.3	67.1

라. 운용자산 규모

[2023.02.28 현재 / 단위 : 억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 및 부동산 파생	특별자산 및 특별자산 파생	혼합자산 및 혼합자산 파생	단기금융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재간접형	파생형					
수탁고	5,886	55,894	2,256	2,118	2,477	380	0	520	140,031	209,562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회 사 명	한국증권금융(주)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02-3770-8880)
회 사 연 혁	1955.10.11 설립 2004.05.31 금융감독원 등록

(1) 주요업무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여부 확인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 수입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 내역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시 기존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

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우리펀드서비스(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 북로 60 길 17 (연락처: 02-3151-3500)
회사연혁	2000.08. (주)리젠코리아 인수 영업개시(신탁사업본부) 2000.11. 신탁사업본부 산하 증권수탁팀으로 흡수 2004.04.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이해상충행위 방지규정으로 업무지원본 부 총무부로 조직개편 2007.02. 우리 CS 자산운용(주)의 업무대리인 계약 2007.12. 조직개편으로 기업영업전략부로 소속 변경 2009.0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신탁사업단으로 소속변경
홈페이지참조	www.woorifs.co.kr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 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사항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홈페이지
KIS자산평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4층 T. 02-3215-1400	www.bond.co.kr
한국자산평가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8 삼환빌딩 4층 T. 02-2251-1300	www.koreaap.com
NICE피앤아이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대하빌딩 4층 T. 02-398-3966	www.nicepni.com
에프앤자산평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61	www.fnpricing.com

	T.02-721-5300	
--	---------------	--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투자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합니다)한 것으로 봅니다.
- 가.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나.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 다.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 라.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제외)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 제188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합니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5) 투자신탁의 합병

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①'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③다만, '②'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 경우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합병하려는 각각의 투자신탁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법시행령 제22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할 것
2. 법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가 동일할 것
3. 집합투자계약에 따른 투자목적, 투자전략 및 투자대상자산 등이 유사할 것
- ④집합투자업자는 소규모 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하는 날의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익자에게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1.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합니다)의 사항
 2. 법 제19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증권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에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에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의 주체]

-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에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경우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해야 함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업무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3) 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나,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계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www.wooriam.kr)·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집합

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전자우편으로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합니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9.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법시행령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라.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 11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

야 합니다.

- 법 제8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내용을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선정기준

구분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투자증권 거래 및 파생상품 거래	-평가항목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거래 유형에 따른 매매체결 능력,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및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선정방법 운용담당자 및 매매담당자는 중개회사별로 조사분석서비스 및 매매체결업무에 대해 최소 매 분기마다 평가하며, 평가 기준을 준용하여 각 중개회사에 점수를 부여합니다. 운용담당자는 중개회사별 배분기준을 마련하고, 매매담당자는 이 기준에 따라 약정을 배분합니다. 다만, 시장상황, 거래종목에 따라 배분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참 고 : 펀드용어 정리

집합투자업자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증권(주식, 채권 등)등에 투자·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신탁업자	투자신탁자산을 관리/보관하는 회사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방형(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신탁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익증권	증권의 일종으로 집합투자업자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이후에 기채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 담보로 맡기고 ABS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특수사채의 일종으로,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 만기에 특정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품으로 옵션과 유사합니다. 살 수 있는 상품은 '콜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은 '풋 워런트'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별첨1]

[당일 공고된 기준가격으로 매입·환매가 가능한 경우]

① 주식 등 다른 증권(결제소요 2일이상)의 매매와 연계하여 MMF계좌의 입출금 예약이 있는 경우

- 주식 매도자금 및 일반펀드 환매자금이 MMF계좌로 자동입금 되도록 약정(또는 예약)되어 있는 경우 MMF에 납입된 자금은 당일 설정 가능
- 주식 매수자금 및 일반펀드 매입자금이 MMF계좌로부터 자동 출금되도록 약정되어 있는 경우 결제일에 MMF 당일 환매 가능

※ 약정(또는 예약) : 결제일 전일 오후 5시 이전에 약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함

② 주기적인 입출금 거래에 대한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

- 입·출금 거래에 대한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 오후 5시 이전에 배치작업(자동이체)방식으로 처리되는 거래분에 대하여는 당일 설정 및 환매 가능(각 판매회사별로 '사전약정에 의한 거래' 본래 목적에 충실한 범위내에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음)
- 결제소요일이 2일 이상인 주식 및 일반펀드의 매도와 관련하여 MMF계좌의 입금이 예약되어 있는 경우와 사전 약정에 의해 공과금 납부 등 MMF에서 자동적으로 입금되는 경우 당일 매입 가능
- 결제소요일이 2일 이상인 주식 및 일반펀드의 매수와 관련하여 MMF계좌의 출금이 예약되어 있는 경우와 사전 약정에 의해 공과금 납부 등 MMF에서 자동적으로 출금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일 환매 가능
- CMA의 거래와 관련하여 자동적으로 대출이 실행되고, 실행된 대출에 대하여 익일 자동상환(CMA약관에 명기되어 있는 사전약정거래임)하는 것으로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 이는 사전약정에 의한 주기적인 입출금 거래로 간주되어 자동적으로 대출상환일에 MMF 당일환매 가능
- 공모주 등의 청약·환불 자금과 연계하여 자동적으로 MMF계좌의 입출금 약정이 있는 경우

주1) 위의 ①, ②에 해당하는 업무는 판매회사에서 전산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는 3년이상 보관하여야 함.

③ 판매회사가 고유자금으로 일정한도(MMF별 판매규모의 5%와 100억중 큰금액)내에서 MMF 수익증권을 당일 공고된 기준가격으로 매입하여 투자자의 환매청구에 응할 수 있음

※ 위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익일 매입·환매제를 준수해야 합니다.